

계량기 점검(검침·송달)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(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11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4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인 계량기 점검(검침·송달) 및 교체업무를 수도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함으로써 비정규직인 종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획기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업무만족도 향상에 따른 대시민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고자,

『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대행사업 위탁 승인 전 의회 의결을 구함

2. 주요내용

가. 계량기 점검(검침·송달) 및 교체업무 대행사업(위탁) 개요

- 수탁자 :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
- 위·수탁기간
 - 계량기 교체 : 2016.07.14. ~ 2021.07.13.(5년)
 - 계량기 점검 : 2016.07.22. ~ 2021.07.21.(5년)
- 대행사업 위탁계약 주요내용 및 종사원
 - ① 계량기 점검(검침·송달)
 - 검침 : 연11,652천 건(월평균 971천 건)
 - 고지서 송달 : 연10,944천 건(월평균 912천 건)
 - 기타 정수처분예고서 및 안내문(동파예방, 요금관련) 송달 등
 - ② 계량기 교체 : 연225천 건(월평균 18.8천 건)

③ 종사원 현황

구 분	계	계량기 점검원	계량기 교체원	근로형태
인 원	428명	354명	74명	기간제근로자 (1년 계약)

나.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(위탁) 필요성

- 「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(2012.1.16, 관계부처 합동)」에 따라 수도사업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인 계량기 점검(검침, 송달) 및 교체업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여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
- 계량기 점검 (검침·송달) 및 교체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만 한시계약직으로 종사원을 채용하여 고용불안에 따른 업무 소홀 우려가 있음
- 현행 계량기 점검(검침·송달) 및 교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(계약기간 1년)는 「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에 따라 1년 이상 고용할 수가 없으며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

다.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(위탁) 기대효과

- 市 예산 편성 및 지도·감독 등을 통해 상수도사업의 기본업무인 계량기 점검(검침·송달) 및 교체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
- 민간에 위탁시에 지급되는 부가가치세, 이윤 등을 절감할 수 있음

라. 추진 계획

- '16. 3~6월 : 업무위탁을 위한 규정 정비, 근로조건 등 협의
- '16. 6월 : 업무 위·수탁 계약체결
- '16. 7월 :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및 근로자 고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등

- 『수도법시행령』
- 『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
- 『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- 『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』
- 『서울시 상수도 검침·교체 종사원 정규직화 관련 협약서』

나. 예산조치 : 기확보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정재연 (☎ 3146-1183)

〈참고자료 1〉

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현황

업무추진 방법

○ 업무 현황

- 계량기 점검 : 점검대상 1,942천 개의 계량기를 2개월 주기로 검침 및 고지서 송달
- 계량기 교체 : 연 225천개의 만기·동과계량기 교체 및 폐전계량기 철거

○ 업무추진 방법

- 계량기 점검
 - 2001.7.21 까지 : 수도사업소별 공무원이 직접 수행
 - 2001.7.22~2015.7.21 : 민간위탁 수행(수도사업소별 공개경쟁입찰)
 - 2015.7.22~2016.7.21 : 직접수행(기간제근로자 1년 근로계약)
- 계량기 교체
 - 2005.7.21 까지 : 수도사업소별 공무원이 직접 수행
 - 2005.7.22~2015.6.30 : 민간위탁 수행(수도사업소별 공개경쟁입찰)
 - 2015.7.14.~2016.7.13 : 직접수행(기간제근로자 1년 근로계약)

종사원 현황

업 무 구 분	합 계	중부	서부	동부	북부	강서	남부	강남	강동	자재
점검	354	43	51	49	44	49	51	33	34	-
교체	74	7	9	10	10	7	9	6	7	9
계	428	50	60	59	54	56	60	39	41	9

관련 법령 및 조례

수도법시행령

제35조(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)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(이하 "수도관리업무"라 한다)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**단순위탁** :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(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수거·처리, 계량기의 검침·교체,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·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

제36조(수도시설 수탁기관)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2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기간제근로자의 사용)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(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)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

제5조(사용원칙)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일자리정책과, 조직담당관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.

서울시상수도 검침·교체종사원 정규직화 관련 협약서('15.7.13)

제1조(정규직화 기본방향 및 기간제 채용)

1. 용역기간 만료(교체 15.6.30, 검침'15.7.21)후 상수도본부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를 거쳐 최종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형태로 정규직화 한다